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 4. 23 선고 2019가합5464 판결 [표시변경등기말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춘천) 2020. 11. 11 선고 2020나815 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 4. 23 선고 2019가합5464 판결

전문

원고A종교단체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규

피고1. B종교단체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문수

변론 종결2020. 4. 2.

판결 선고2020. 4. 23.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1.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 4. 26. 접수 제23779호로 마친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서 퇴거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가. 원주시 D 대 1,268m²(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 이하 '제1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6. 10. 10.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나. 원주시 D 지상 건물(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 이하 '제1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8. 6. 7. 'A'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 다. 원주시 E 대 214m²(별지 목록 순번 3 기재 부동산, 이하 '제2 토지'라고 한다) 및 지상 3층 건물(별지 목록 순번 4 기재 부동산, 이하 '제2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3. 7. 18. 'A 대표자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26. 등기명의인의 명칭을 'B'으로 변경하는 각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불교회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사재를 출연한 F, G, H, I 등 14인과 법회를 주관하는 스님인

피고 C 등 15명으로 설립된 후 A의 이사 내지 감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이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데, 원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피고 B의 명칭으로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등기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침해받고 있다. 따라서 피고 B은 위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등기를 각 말소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고들은 적법한 권원 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인도하거나 퇴거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A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A의 이사 내지 감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이 아니고, 사찰인 A에 소속된 주지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신도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다. A은 특정 종단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가 신도들 및 대표자의 총의에 따라 특정 종단에 소속됨에 따라 명칭을 변경한 것이므로 각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등기 전후에 걸쳐 그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된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의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J은 A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원고는 총회 결의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원고 단체가 피고들이 주장하는 A, 즉 사찰인 A에 소속된 스님과 신도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임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원고는 스스로 F, G, H, I 등 14인과 법회를 주관할 스님인 피고 C 등 15명으로 설립되어 A의 이사 내지 감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이라고 주장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4.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각 청구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A임을 전제로 하므로 먼저 이에 관하여 보되, 등기기록상 등기명의인인 A과 원고를 구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기록상 등기명의인인 A을 지칭할 때에는 "A"이라고 표기한다.

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5, 6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증인 K의 증언, 증인 L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경위 및 사용 현황 등

가) 1982년경 설립되어 원주 시내 불교신도를 회원으로 하는 M와 그 지도법사 피고 C 등은 법회를 할 수 있는 불교회관을 설립하기로 하였다. 이후 불교회관 설립을 위하여 1986년경 제1 토지를 매수하고, 1988년경 그 지상에 제1 건물을 건축하였다. 제1 건물은 최초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신축되었고 이후 수년에 걸쳐 3층 건물로 증축되었다.

제1 토지의 매수자금 및 제1 건물의 건축자금은 A 설립 당시 이사 등 M 회원들이 출연한 돈, M와 피고 C이 주축이 된 모금 활동 등을 통해 마련한 돈, 일반 불교신자들이 출연한 돈 및 대출금으로 조달되었다.

나) 제1 건물에는 법회를 진행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서 건축 직후부터 정기적으로 법회가 열렸고, 불상을 안치하고 스님들이 상주하며 일반 신도들이 법회에 참여하여 왔다.

다) 제2 토지 및 제2 건물은 원고와 피고측이 별개의 정관과 임원진을 구성하여 활동하기 시작하였다는 2013년 2월경 이후인 2013. 7. 18.에서야 'A 대표자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정관 규정 및 운영 형태

가) "A" 정관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제1 토지 및 제1 건물 취득 시에 근접한 1990. 1. 21. 개정된 정관(갑 제6호증, 을 제7호증)을 기초로 본다.

나) "A"은 석가세존의 가르침을 받들어 수행을 통하여 모두 성불하고 불교중흥을 통하여 불국토를 이룩함을 목적으로 하고(제3조), 지역 불교발전의 구심점으로 미래 지향적인 발전과 확장을 위한 사업, 범종단적 사부대중의 화합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 불교중흥을 위한 포교문화 사회사업, 후진불교인의 양성을 위한 사업, 교화를 위한 출판물의 간행, 기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수행한다(제5조).

다) "A"의 임원으로 이사 10명 이상 20명 이내, 이사장 1명, 원장 1명, 감사 2명, 포교위원 20명 이내를 두게 되어 있고(제6조), 이사장은 재산권의 대표권 및 감독권을 가지며, 원장은 운영 및

인허가상의 대표권을 가지고 신행 및 포교행사를 주관하며,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여 이사회를 통해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이사회 결의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고(제8조), 감사는 재산상황감사,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상황의 감사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라) "A"은 위 정관 규정에 따라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 조직을 갖추어 운영되어 왔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경위 및 사용 현황, "A"의 목적 및 사업 내용, 운영형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A"의 이사장, 원장, 이사 등의 임원은 "A"의 의사결정기관의 구성원 내지 집행기관이 될 뿐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제1 토지 및 제1 건물 취득자금의 일부가 "A"의 초기 이사들이 출연한 돈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선임된 이사 내지 감사만이 "A"의 구성원이 된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A"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중심으로 불교교의를 선포하고 불교의식을 거행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스님들과 신도들의 조직인 비법인사단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던 "A"이 원고와 동일한 단체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신교식

판사공민아

판사정지원

별지